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변 론 종 결 2021. 12. 1.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G, H, I은 경북 의성군 K 답 3,05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80. 8. 29. 접수 제25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경북 의성군 L 전 1,299㎡에 관하여,
1) 피고 C, D, E, F, G, H, I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80. 7. 25. 접수 제199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J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4. 6. 20. 접수 제162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경북 의성군 K 답 3,05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경북 의성군 L 전 1,299㎡(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백부인 망 M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망 M은 원고의 망부 N이 6. 25. 사변으로 전사하여 원고가 수령하게 된 유족보상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입하였던 것이고 원고를 사실상 양자로 받아들여 원고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를 양육해 왔는바, 원고는 망 M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망 M의 동생이자 원고의 작은 아버지인 망 O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O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C, D, E, F, G, H, I이 망 O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J는 망 O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위와 같이 자신이 망 M의 사실상 양자로서 그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친자관계가 창설되기 위해서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는 경우라도 입양신고 또는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하는 친생자출생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양친자관계는 창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1므19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M이 원고를 사실상 양자로서 받아들여 양육하였다는 것일 뿐, 입양신고나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하는 친생자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원고와 망 M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창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원고가 망 M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범